#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41

발의연월일: 2020. 8. 10.

발 의 자:이용호·김민철·박영순

이수진비・한병도・김남국

고영인 · 이상헌 · 안호영

김수흥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압박이 작은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매매에 집중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실제로 2020년 6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2,090 건에 달해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음. 외국인의 투기 성 국내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20%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특히 해당 외국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26%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입을 예방하고 국민법감정에 합당한 외국인의 부동산 납세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제13조).

법률 제 호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1천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⑨ 제5항과 제6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에 중과기 준세율의 100분의 1천3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제6항 중 "제13조제6항"를 "제13조제7항"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7항"를 각각 "제9항"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 유상거래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6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⑤ (생 략)	중과) ① ~ ⑤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				
	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1천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u>⑥</u> ·⑦ (생 략)	<u>⑦</u> ・ <u>⑧</u> (현행 제6항 및 제7항				
	과 같음)				
<u>&lt;신 설&gt;</u>	⑨ 제5항과 제6항이 동시에 적				
	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				
	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				
	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				
	의 1천300을 합한 세율을 적용				
	<u>한다.</u>				
⑧ (생 략)	⑪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6조(세율 적용) ① ~ ⑤ (생	제16조(세율 적용) ① ~ ⑤ (현				
략)	행과 같음)				
⑥ 취득한 부동산이 제1항제1	6				
호 또는 제2호와 제4항이 동시					

에	적	용되는	こる	] 우여	는	제5	)항	에
도	불	구하.	고 <u>저</u>	]13조	:제6	항으	븨	세
율	슬	적용	하여	취목	득세:	를	추	징
한ᠮ	구.							

-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생략)
  -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 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③ ④ (생 략)

<u>제13조제7항</u>
<b>.</b>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항
제9항
③・④ (현행과 같음)